

## 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전문간호사의 자격인정 요건을 법률로 상향 입법하고,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내용으로 「의료법」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, 분야별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처치·주사 등 진료에 필요한 업무 중 의사 등의 지도하에 수행하는 업무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고,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.

## 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1. 8. 3. ~ 9. 13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##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

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자격증”을 “자격 시험, 자격증, 업무 범위”로 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업무 범위) 전문간호사는 「의료법」 제7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야별 업무 범위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
### 1. 보건

가. 처치·주사 등 보건 진료에 필요한 업무 중 의사,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지도하에 수행하는 업무

나. 보건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

다. 보건전문간호 분야의 교육, 상담, 관리 및 연구 등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질병 예방, 보건교육, 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 등 보건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

### 2. 마취

가. 처치·주사 등 마취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중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수행하는 업무

나. 마취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

다. 마취전문간호 분야의 교육, 상담, 관리 및 연구 등 전문성 향상  
라. 그 밖에 마취 준비, 마취 후 회복 관리 등 마취전문간호에 필요  
한 업무

### 3. 정신

가. 처치·주사 등 정신질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중 의사 또는 한  
의사의 지도하에 수행하는 업무

나. 정신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

다. 정신전문간호 분야의 교육, 상담, 관리 및 연구 등 전문성 향상  
라. 그 밖에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간호, 환자·가족·지역사회 등  
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 등 정신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

### 4. 가정

가. 「의료법 시행규칙」 제24조에 따른 가정간호

나. 가정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

다. 가정전문간호 분야의 교육, 상담, 관리 및 연구 등 전문성 향상  
라. 그 밖에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등 가정전문간호에 필요  
한 업무

### 5. 감염관리

가. 처치·주사 등 감염관리 진료에 필요한 업무 중 의사, 치과의사  
또는 한의사의 지도하에 수행하는 업무

나. 감염관리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

다. 감염관리전문간호 분야의 교육, 상담, 관리 및 연구 등 전문성

향상

라. 그 밖에 감염 예방·감시·관리, 감염관리 교육 등 감염관리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

## 6. 산업

가. 처치·주사 등 산업보건 진료에 필요한 업무 중 의사,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지도하에 수행하는 업무

나. 산업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

다. 산업전문간호 분야의 교육, 상담, 관리 및 연구 등 전문성 향상

라. 그 밖에 근로자 건강관리, 산업재해 예방, 작업환경 개선 등 산업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

## 7. 응급

가. 처치·주사 등 응급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중 의사의 지도하에 수행하는 업무

나. 응급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

다. 응급전문간호 분야의 교육, 상담, 관리 및 연구 등 전문성 향상

라. 그 밖에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, 응급환자에 대한 처치·관리 등 응급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

## 8. 노인

가. 처치·주사 등 노인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중 의사,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지도하에 수행하는 업무

나. 노인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

다. 노인전문간호 분야의 교육, 상담, 관리 및 연구 등 전문성 향상  
라. 그 밖에 노인 질환 관리 및 건강 증진에 필요한 활동 등 노인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

## 9. 중환자

가. 처치·주사 등 중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중 의사의 지도하에 수행하는 업무

나. 중환자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

다. 중환자전문간호 분야의 교육, 상담, 관리 및 연구 등 전문성 향상

라. 그 밖에 중환자 상태 변화의 감시 등 중환자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

## 10. 호스피스

가. 처치·주사 등 호스피스 진료에 필요한 업무 중 의사 또는 한의사의 지도하에 수행하는 업무

나. 호스피스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

다. 호스피스전문간호 분야의 교육, 상담, 관리 및 연구 등 전문성 향상

라. 그 밖에 호스피스 전환기 환자 관리 및 임종 간호, 환자 가족을 위한 상담 등 호스피스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

## 11. 종양

가. 처치·주사 등 종양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중 의사, 치과의사

또는 한의사의 지도하에 수행하는 업무

나. 종양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

다. 종양전문간호 분야의 교육, 상담, 관리 및 연구 등 전문성 향상  
라. 그 밖에 종양 환자의 증상 관리, 암 생존자 관리 등 종양전문 간  
호에 필요한 업무

## 12. 임상

가. 처치·주사 등 임상 진료에 필요한 업무 중 의사, 치과의사 또는  
한의사의 지도하에 수행하는 업무

나. 임상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

다. 임상전문간호 분야의 교육, 상담, 관리 및 연구 등 전문성 향상  
라. 그 밖에 질환·합병증 등 임상증상 수집, 치료를 위한 간호 등  
임상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

## 13. 아동

가. 처치·주사 등 아동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중 의사, 치과의사  
또는 한의사의 지도하에 수행하는 업무

나. 아동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

다. 아동전문간호 분야의 교육, 상담, 관리 및 연구 등 전문성 향상  
라. 그 밖에 아동·가족의 건강력 수집, 아동의 건강문제 관리 및 건  
강증진을 위한 간호 등 아동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

제4조제1항 중 “전문간호사 교육과정”을 “「의료법」 제78조제2항제1호  
에 따라 전문간호사 교육과정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

이 신설한다.

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체계적·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전문간호사 교육과정 관리 업무의 일부를 간호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제9조제1항 중 “제3조”를 “「의료법」 제78조제2항”으로 한다.

제14조를 삭제한다.

별표 1 제1호다목의 실무경력인정기관란 중 “「정신보건법」에 따른 정신보건시설 또는 정신보건센터”를 “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”로 한다.

별표 2 정신 전문간호사의 실습 협약 기관란 제2호 중 “정신질환자사회복지시설, 정신요양시설, 정신보건센터”를 “정신요양시설, 정신재활시설, 정신건강복지센터”로 하고, 같은 표 산업 전문간호사의 실습 협약 기관란 제1호 중 “산업의학과”를 “직업환경의학과”로 하며, 같은 표 중환자 전문간호사, 임상 전문간호사 및 아동 전문간호사의 실습 협약 기관란 중 “종합전문요양기관”을 각각 “상급종합병원”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의료법」 제78조에 따라 전문간호사의 자격 구분, 자격 기준, <u>자격증</u>, 그 밖에 자격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3조(자격인정 요건) 전문간호사 <u>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시험(이하 “자격시험”이라 한다)에 합격하여야 한다.</u></p> <p>1. 제4조에 따른 전문간호사 <u>교육과정을 마친 자</u></p> <p>2. <u>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분야 전문간호사 자격이 있는 자</u>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<u>자격시험, 자격증, 업무 범위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제3조(업무 범위) 전문간호사는 「의료법」 제7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<u>분야별 업무 범위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</u></p> <p>1. 보건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<u>가. 처치·주사 등 보건 진료에 필요한 업무 중 의사,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지도하에 수행하는 업무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<u>나. 보건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<u>다. 보건전문간호 분야의 교육, 상담, 관리 및 연구 등 전문성 향상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<u>라. 그 밖에 지역사회 질병 예방, 보건교육, 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 등 보건전문간</u></p>



호에 필요한 업무

2. 마취

가. 처치·주사 등 마취환자  
진료에 필요한 업무 중 의  
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 
하에 수행하는 업무

나. 마취전문간호 제공을 위  
한 협력과 조정

다. 마취전문간호 분야의 교  
육, 상담, 관리 및 연구 등  
전문성 향상

라. 그 밖에 마취 준비, 마취  
후 회복 관리 등 마취전문  
간호에 필요한 업무

3. 정신

가. 처치·주사 등 정신질환  
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중  
의사 또는 한의사의 지도  
하에 수행하는 업무

나. 정신전문간호 제공을 위  
한 협력과 조정

다. 정신전문간호 분야의 교  
육, 상담, 관리 및 연구 등  
전문성 향상

라. 그 밖에 정신질환자 등에  
대한 간호, 환자·가족·

지역사회 등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 등 정신 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

#### 4. 가정

가. 「의료법 시행규칙」 제 24조에 따른 가정간호

나. 가정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

다. 가정전문간호 분야의 교육, 상담, 관리 및 연구 등 전문성 향상

라. 그 밖에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등 가정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

#### 5. 감염관리

가. 처치·주사 등 감염관리 진료에 필요한 업무 중 의사,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지도하에 수행하는 업무

나. 감염관리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

다. 감염관리전문간호 분야의 교육, 상담, 관리 및 연구 등 전문성 향상

라. 그 밖에 감염 예방·감시

· 관리, 감염관리 교육 등  
감염관리전문간호에 필요  
한 업무

## 6. 산업

가. 처치·주사 등 산업보건  
진료에 필요한 업무 중 의  
사,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 
의 지도하에 수행하는 업  
무

나. 산업전문간호 제공을 위  
한 협력과 조정

다. 산업전문간호 분야의 교  
육, 상담, 관리 및 연구 등  
전문성 향상

라. 그 밖에 근로자 건강관리,  
산업재해 예방, 작업환경  
개선 등 산업전문간호에  
필요한 업무

## 7. 응급

가. 처치·주사 등 응급환자  
진료에 필요한 업무 중 의  
사의 지도하에 수행하는  
업무

나. 응급전문간호 제공을 위  
한 협력과 조정

다. 응급전문간호 분야의 교

육, 상담, 관리 및 연구 등  
전문성 향상

라. 그 밖에 응급환자 중증도  
분류, 응급환자에 대한 처  
치·관리 등 응급전문간호  
에 필요한 업무

#### 8. 노인

가. 처치·주사 등 노인환자  
진료에 필요한 업무 중 의  
사,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 
의 지도하에 수행하는 업  
무

나. 노인전문간호 제공을 위  
한 협력과 조정

다. 노인전문간호 분야의 교  
육, 상담, 관리 및 연구 등  
전문성 향상

라. 그 밖에 노인 질환 관리  
및 건강 증진에 필요한 활  
동 등 노인전문간호에 필  
요한 업무

#### 9. 중환자

가. 처치·주사 등 중환자 진  
료에 필요한 업무 중 의사  
의 지도하에 수행하는 업  
무

나. 중환자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

다. 중환자전문간호 분야의 교육, 상담, 관리 및 연구 등 전문성 향상

라. 그 밖에 중환자 상태 변화의 감시 등 중환자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

#### 10. 호스피스

가. 처치·주사 등 호스피스 진료에 필요한 업무 중 의사 또는 한의사의 지도하에 수행하는 업무

나. 호스피스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

다. 호스피스전문간호 분야의 교육, 상담, 관리 및 연구 등 전문성 향상

라. 그 밖에 호스피스 전환기 환자 관리 및 임종 간호, 환자 가족을 위한 상담 등 호스피스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

#### 11. 종양

가. 처치·주사 등 종양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중 의

사,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지도하에 수행하는 업무

나. 종양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

다. 종양전문간호 분야의 교육, 상담, 관리 및 연구 등 전문성 향상

라. 그 밖에 종양 환자의 증상 관리, 암 생존자 관리 등 종양전문 간호에 필요한 업무

## 12. 임상

가. 처치·주사 등 임상 진료에 필요한 업무 중 의사,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지도하에 수행하는 업무

나. 임상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

다. 임상전문간호 분야의 교육, 상담, 관리 및 연구 등 전문성 향상

라. 그 밖에 질환·합병증 등 임상증상 수집, 치료를 위한 간호 등 임상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

13. 아동

가. 처치·주사 등 아동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중 의사,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지도하에 수행하는 업무

나. 아동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

다. 아동전문간호 분야의 교육, 상담, 관리 및 연구 등 전문성 향상

라. 그 밖에 아동·가족의 건강력 수집, 아동의 건강문제 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한 간호 등 아동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

제4조(전문간호사 교육과정) ①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이 실시하고 그 교육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한다.

② (생략)

<신설>

제4조(전문간호사 교육과정) ① 「의료법」 제7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전문간호사 교육과정-----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체계적·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

제9조(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및 응시절차) ①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  
② ~ ⑤ (생략)

제14조(규제의 재검토)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요건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따른 전문간호사 교육과정 관리 업무의 일부를 간호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제9조(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및 응시절차) ① -----  
----- 「의료법」 제78조 제2항 -----.  
② ~ ⑤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